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김원섭 의원 외 9명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김원섭 · 김민성 · 김영태 · 김재우
김정도 · 박교상 · 박세채 · 신용하
이정희 · 장미경 의원(10명)

1. 제안이유

매년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욕구를 반영한 식단구성의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용단가 인상을 통하여 식단의 질을 높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영양공급을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식단구성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로 식당 이용료 인상(2,800원에서 3,500원) (안 별표1)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기 타 : 별표 1(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로 식당의 이용료란 중 “2,800원”을 “3,5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이용요금(제8조제1항 관련)

시설종류	이용대상	이용료산출	이용료
경로 식당	- 회원 및 일반노인	1식	3,500원
찜질방	- 회원 및 일반노인	1회	1,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무료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욕구를 반영한 식단구성을 위하여 경로식당 이용 단가를 인상하고, 이용단가 인상에 따라 시 지원예산 증액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소요금액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비 용	392,175	423,175	456,666	492,522	530,370	2,294,90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 비	392,175	423,175	456,666	492,522	530,370	2,294,908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노인종합복지관 관리계 강유현(054-480-485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방법

-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 단가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별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추계한 것으로, 1일 급식단가 3,500원 기준으로 65세이상 어르신은 2,000원을, 기초수급자 어르신은 3,500원을 지원코자 하며, 2023년 선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개관시 예상인원을 포함하여 1일 평균 이용인원으로 추계하였으며,
- 향후 이용인원은 연평균 회원증가율인 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단위:천원)

구분 \ 연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합계	2,294,908		
2023	392,175	○ 복지관이용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2,000\text{원} \times 630\text{명} \times 249\text{일} = 313,740$ ○ 복지관이용 기초수급 어르신 급식비 지원 $3,500\text{원} \times 90\text{명} \times 249\text{일} = 78,435$	
2024	423,175	○ 복지관이용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2,000\text{원} \times 680\text{명} \times 249\text{일} = 338,640$ ○ 복지관이용 기초수급 어르신 급식비 지원 $3,500\text{원} \times 97\text{명} \times 249\text{일} = 84,535$	
2025	456,666	○ 복지관이용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2,000\text{원} \times 735\text{명} \times 249\text{일} = 366,030$ ○ 복지관이용 기초수급 어르신 급식비 지원 $3,500\text{원} \times 104\text{명} \times 249\text{일} = 90,636$	
2026	492,522	○ 복지관이용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2,000\text{원} \times 793\text{명} \times 249\text{일} = 394,914$ ○ 복지관이용 기초수급 어르신 급식비 지원 $3,500\text{원} \times 112\text{명} \times 249\text{일} = 97,608$	
2027	530,370	○ 복지관이용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2,000\text{원} \times 855\text{명} \times 249\text{일} = 425,790$ ○ 복지관이용 기초수급 어르신 급식비 지원 $3,500\text{원} \times 120\text{명} \times 249\text{일} = 104,580$	